이런 주장에 비해 정부보고서가 제시한 통계들은 경제성장과 정부가 취한 조치들의 성과와 그와 관련된 부문의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계층의 상황과 개선정도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가 누락됨으로써 그것이 적절한 수준인지 개선된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한다. 또한 국제수준과 비교하거나 비교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보고서의 내용만을 가지고 볼 때, 한국에서 권리보장이 가장 시급한 집단이 누구이며, 가장 문제되는 사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림버그원칙에서는 "권리가 사실상 보장된 정도를 알리기 위하여 수량적 정보가 포함되야만 한다. 통계적 정보와 예산할당과 지출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야만 한다.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와 지표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한 목표와 지표는 적합한 것으로서 당사국이 그들의 보고서에서 제출한 통계의 적절성과 비교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제협력을 통해 세워진 기준에 기초해야 한다.[13]"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정부보고서는 사회권조약의 각 조항과 관련된 한국의 법조문을 나열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관련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인 권리보장의 수준과 일치하고 있는 듯한 서술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구체적 이행 상황과는 유리된 추상적 설명에 그치고 있고 법원의 판례나 실제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음으로 해서 조약의 의무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어려움에 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보고서의 "직업선택 및 고용조건상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조항은 헌법 15조, 근로기준법 5조, 남녀고용평등법의 문구를 인용하는데서 그치고 있고 보고서 전반은 이런 방식의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정부시책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구체적 절차와 예산할당 등 실시계획이 아닌 " … 한 풍토를 조성할 것이다"는 막연한 기술로 일관하고 있다.

13) Limburg Principles 79항

한편, 법조문의 나열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조약이 정한 인권보장과 관련된 한국의 법체계를 충분히 소개하고 있지 못한 수준이다. 특히 노동권과 관련된 법률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여러 차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는 노동조합 가입권에 대한 제한규정, 노동조합의 활동제한 규정, 노동쟁의의 금지에 관한 조항 등에서 정부는 개정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법률의 타당성을 주장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은 "조약이행에 영향을 주기 위해 취해진 법적 조치를 보고하는데 있어서 정부는 단순히 관련 입법규정만을 기술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채택한 사법적 구제책과 행정절차를 비롯한 수단과 그러한 구제책과 절차하에서의 실천내용을 적절하게 구체화시켜야 한다[14]"는 원칙에서 동떨어져 있으며, 결론적으로 조약을 국내법의 일부로 받아들여 적용하기 위한 정부와 법원 차원의 노력은 아직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가장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한 것은 보고서 작성과 제출과정의 철저한 비공개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홍보의 부족 때문에 사회권조약의 비준과 관련된 일체의 정부활동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조약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에게 조차 보고

14) Limburg Principles 78항. 이에 관련된 규정으로는 17항: "국가적 수준에서 당사국 정부는 조약하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권리의 성격과 일치되도록 입법, 행정, 사법, 경제 · 사회 · 교육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야만 한다.", 18항: "입법화의 수단만으로는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치 않다. 그러나, 기존의 입법이 조약하에서 추정된 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입법화 조치가 자주 고려되는 것이 주목되야만 한다.", 19항: "당사국 정부는 사법적 구제책을 포함하여 적절한 영역에서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만 한다." 80항: "필요하다면, 정부는 조약상의 권리의 실행준수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나타난 어려움과 진전사항에 관한 정보간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연구를 주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81항 "정부보고서는 국제협력을 통해 더많은 진전이 이뤄질 수 있는 지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서의 준비와 제출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 더욱이, 민간단체들이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또는 유엔에서 공식화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94년 6월 16일까지 정부보고서의 복사본을 제공하기를 거절했다.[15]

또한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의 포괄성과 방대함으로 해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들의 논의와 조언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입장과 통계만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으며, 관련부처간의 협조나마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된 림버그원칙의 규정[16]을 살펴 볼 때, 보고서 작성과정의 폐쇄성과 민간단체 보고서 작성에 대한 철저한 비협조는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정부보고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에 대해 살펴

15) NGO's Initial Repor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South Korea*, June, 1994, p3

16) Limburg Principles 9항: "민간단체는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역할은 국제적 수준에서나 국내적 수준에서나 용이해야만 한다."

11항: "사회 모든 구성원의 충분한 참여를 불러일으키려는 국가 차원의 집중된 노력이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대중적인 참여는 모든 단계, 즉 국가정책의 형성, 적용, 재검토 단계에서 필요하다.

74항: "감독기제의 효과성은 보고서의 질과 적시성에 의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관부처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충분한 국내절차, 관련 자료의 수집, 실무진의 훈련, 배경서류의 입수, 관련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와의 협의 등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76항: "당사국 정부는 보고의무를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목적에 대한 광범위한 공적토론의 기회로 봐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광범위한 공공성이 보고서에 부여되야 하며, 가능하다면 초고상태부터 그래야 한다. 또한 보고서의 준비는 관련 국가정책이 각 권리의 범위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재검토하는 기회일 수 있다. 또한 그것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수단을 구체화하는 기회일 수 있다."

77항: "정부는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민간단체를 관련시킬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고무되어야 한다."

보고자 한다.[17]

첫째, 조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정부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으며, 사회권 위원회의 사전 심의작업분과에서 사전에 제기한 질문 사항에는 '사회권조약의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금년 5월에 열린 위원회의 12차회기에서 한국정부보고서가 심사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Danan위원은 "사회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가,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10명에게 물어보았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국제조약에 관하여 안다고 답변할 수 있는가"라고 구체적인 질문을 한 반면, 답변에 나선 허승 대사는 "인권에 대해 사람들이 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다(more and more aware of human rights). 인권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토론이 되었다. 그리하여 차별받거나 불법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면 10명 모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알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10명에게 이 조약을 아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몇명이나 안다고 답변할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해서 많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가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으로 변화 중에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18] 정부가 홍보와 교육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고 취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역시 언급이 없다.

정부가 조약을 번역하여 대중적으로 출판한 자료는 없으며, 초 · 중 · 고 교과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이나 경찰,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인권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한국민 중에서 본 조약의 이름을 들어본 국민은 거의 없으며, 국민의 인권보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 조차도 이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런 정부의 태도 때문에 한국내 언론은 국제인권보장에 대해 무지할 뿐더리 보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17) 이 부분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작성한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민간단체보고서의 '서문'을 보완한 것이다.

18) 김선수, 제 12차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참가보고서, 5쪽

비엔나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각국은 인권강화를 위한 교육과 공공정보보급을 광범위하게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데, 우선은 국제인권조약집을 출판하여 널리 보급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인권기구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수집, 번역하여 필요로 하는 해당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권문제 관련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정부대표들이 위원회 심사 중에 보여준 태도는 심사제도의 취지와 기초도 모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19]

따라서, 한국에서 사회권 조약의 실행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홍보와 교육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의 분단과 방위비의 과다한 지출이라는 조건과 새롭게 등장한 '세계화전략'을 들 수 있다.[20]

정부는 매년 국가예산의 25-30%(1994년 24.25%)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개발과 사회개발프로그램에 할당해야 할 자원의 수준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사회는 장기간에 걸친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통해 불평등의 심화, 사회통합의 실패를 낳았고, 이는 인간·사회개발을 위한 다음 단계의 전략에 대한 정치적 합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19) 이는 민간대표단의 보고서에서 "언어구사능력의 부족, 핵심적 문제를 비껴가는 답변, 답변의 보류, 시간끌기식 답변"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Limburg Principles 82항에는 "당사국 정부와 조약규정과의 일치를 평가하는 기관과의 의미있는 대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충분히 알고있는 대표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20) 이와 관련되어 Limburg Principles의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에 대한 해석, 62-68항을 살펴볼 수 있다. 관련조항을 예를 들면, "막연하고 자의적인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될 수 없다. 남용에 대한 충분한 안전망과 효과적 구제책이 존재할 때에만 국가안보에 호소할 수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체계화된 침해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안보를 손상시키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한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그러한 침해에 대한 반대를 억압하거나, 자국민에 대한 억압적인 행위에 목적을 둔 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에 호소해서는 안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존중이 공공질서의 부분이다.", "공공질서의 유지를 책임진 국가조직 또는 기관은 그들의 권력을 의회, 법원, 다른 소관의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행사하는 속에서만 통제해야 한다." 등이다.

최근 문민정부에 와서는 Globalization을 Segyehwa라는 고유어로 표기하는 노력까지 보이면서, 세계화 전략을 '국가발전전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세계화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이며 그것이 바로 세계화라는 등식 속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다. 세계화의 내용과 장기적 목표가 처음부터 제시되지 않고 정치적 국면전환의 카드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세계화 전략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 요구를 '경쟁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까지도 노동자와 생존권 요구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일이 많았다. 남북분단을 이유로 하여 이들의 생존권 요구를 안보위협의 요소, 즉 공산주의적인 것 또는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여론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문민정부하에서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이나 빈민·장애인 등의 사회적 권리 주장이 세계화 전략 속의 '국가경쟁력'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노조지도자를 처벌하던 법원은 최근들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주의 '손해배상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구촌 문제의 범람 속에서 인류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상호협조와 상호공존이 강조되야 하는 '세계화'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익'이라는 부분을 정부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 제한을 남용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셋째, 국가책임성의 결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치를 들 수 있다.

림버그 원칙은 "국가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된 국제적 최저달성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21]"을 조약의 위반으로 보고 있고,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로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긴급한 고려, 사회 모든 구성원의 충분한 참여를 불러 일으키는 것, 빈민과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22]

21) Limburg Principles 72항

그러나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사회복지 기반은 한국의 경제수준에 걸맞지 못할 뿐더러 '최저수준의 보장'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GNP 세계 10위권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200만의 절대빈곤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낙후됐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예산지출 대비 사회복지 예산의 비율은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중·상위권 국가에 못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소득 하위국가에도 못미치는 9.67%이다(UN-Report on the World Social Situation, 1993). 이런 복지예산 수준이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과정에서는 합리화되었을지 모르나 상대적인 풍요를 자랑하는 현재에도 획기적인 개선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책임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어, 시장의 실패에 개입해 약자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복지 본래의 의미에서 많이 빗나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보장 재정지출 수준이 극히 낮은 데서 나타나듯 재정책임은 지지않는 정부가 많은 복지제도의 관리운영체계를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비용부담자인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운영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을 낳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과 그에 따른 공적 의무인 보고서 제출이 절차에 따른 정부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행위에 그치고 있으며, 인류보편의 인권에 대한 이해나 우리나라의 인권보장 상황에 대한

22) Limburg Principles 14항: "빈민과 다른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만 하고, 선주민과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고려되야만 한다.", 39항: "평등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위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집단과 개인을 위해 채택한 특별한 수단은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덧붙여 정부보고서에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급이 없다는 점과 Limburg Principles에서는 "일반적 원칙으로 조약은 자국민과 비자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비자국민에 대한 사회권조약 제2조 3항의 제한조항은 식민기간동안의 비자국민에 대한 어떤 경제집단의 지배에 목적을 둔 규정으로서 '협소'하게 해석되어야만 한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국·내외의 논의와 비판을 수용하려는 노력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된다.

4. 민간단체보고서의 준비

위와 같은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에 비춰볼 때 민간단체 보고서가 갖는 의의는 크다.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상황을 국제수준에 비춰 검증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이며, 사회권위원회의 평가와 권고는 인권운동 부문에서 사회권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이끌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가 93년 10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정보를 외국의 한 단체를 통해 입수한 것은 94년 5월 20일 경이었다. 정부는 최초보고서의 제출사실을 전혀 공개한 바 없었고, 따라서 그해 6월 27일부터 열리게 될 사전실무분과 회의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단체보고서 작성사업은 긴박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권영길(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및 업종회의공동대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조용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인이 민간보고서의 공동작성을 긴급제안했고, 이에 찬성한 9개단체[23]가 모임을 갖고 바로 해당분야 집필에 들어갔다.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약식보고서는 제네바로 출국한 실무대표자에 의해 유엔인권센타 사무국에 직접 제출되어 관계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실무분과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한국정부에게 보내는 28항목의 질문을 확정하여 공개했다.

위원회는 본래 94년 11월의 11차 회기에서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

23)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인권센터, 한국노동정책연구소, 한국도시문제연구소, (동의서명단체: 노동과 건강 연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정부가 연기를 요청하여 95년 5월의 12차 회기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이에 약식보고서를 준비했던 민간단체들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정식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모임을 계속했다. 95년 1월, 새해초부터 시작된 준비모임은 위원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 취합된 초고를 기초로 한 '요약본'을 3월 29일 유엔에 미리 발송하였고, 5월에 열린 본회의에는 정식보고서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대표단의 발언시 참조할 슬라이드 필름을 준비하여 대표단 4인이 참석하였다.

민간단체보고서는 한글본이 110쪽, 영문본이 10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며, 노동권, 사회보장권, 주거권, 장애우 인권, 가족생활보장권, 교육권, 문화권 등 사회권의 상황에 대한 서술, 정부보고서에 대한 평가, 대정부 제안 및 질의안 등을 담고 있다.

5. 유엔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결론적 의견

위원회는 1995년 5월 2, 3일에 열렸던 회의에서(E/C.12/1995/SR 3, 4 and 6)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적 의견을 채택하였다.[24]

먼저 조약의 적용을 저해하는 요인과 장애에 있어서는 뚜렷하면서도 급속한 경제발전을 정착시키려는 노력과 그 성과가 항상 적절한 수준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의 보호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에 야기된 문제들 때문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이유를 둔 광범위하고도 고착된 적대의식의 지속을 지적하고 있다.

24) VUTERE E/C.12/1995/3 19 May 1995.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ation of Reports Summitted by Stat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Conclusion observation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둘째, 가장 우려되는 분야에 있어서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한 유감을 민지 표하고 있다. 즉, 한국정부의 대표들이 모든 국내법이 조약상의 규정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적합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된 사항으로는 방위산업체 종사자와 교사에 대한 노동조합 결성권의 제약이 사회권조약 8조에 따른 한국정부의 의무가 배치된다고 본다. 이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여러 해고소식과 조합원들의 평화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 대해서 대단히 놀랍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여성의 지위, 고용시 성차별 · 작업장에서의 차별적인 관행 · 남녀간 임금격차 등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높은 빈도의 산업재해, 외국인에 대한 처우와 작업조건, 교육제도에 있어서의 고등교육 기회의 공급부족, 부적합한 주거상황, 무주택자의 숫자와 강제철거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한국정부가 가용자원을 고려할 때, 주변계층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불충분한 조치만을 해왔을 뿐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셋째, '제안과 권고'에 있어서 위에서 지적한 우려사항에 대한 국내법의 즉각적 개정, 프로그램의 마련, 차별의 철폐, 추가정보의 제출, 인권교육프로그램의 마련, 사회적 소외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 등에 걸쳐 강경한 표현의 권고와 점진적인 개선의 노력이 아닌 즉각적인 법개정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6. 마치며

사회권위원회의 결론적 의견의 상당부분은 민간단체의 제안내용과 일치되며, 노동조합결성권, 파업권, 경찰폭력, 여성평등, 주거권, 영세민층, 사회복지 등 우리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할 점들에 대한 권고가 발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러 단체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보고서 제출의 성공과 정부보고서에 대한 단순한 반박 차원을 넘어서서 인권단체들

간에 사회권에 대한 인식에 일정한 진전을 이룬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후 5년마다 있을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심의의 과정은 활용하기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권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공적 토론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국제사회의 기준에 비춰 우리의 문제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현재, 시민 · 정치적 권리에 집중하고 있는 많은 인권관련단체들이 사회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정부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민간보고서의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 그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넓은 분야의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정부에 교육과 홍보의 의무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기본적 인권과 주요 인권조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개발하여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민간단체의 활동에 있으므로 민간단체의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야 할 것이다. 정부 담당 기관의 조약에 따른 국내법의 개정과 국내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시,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는 상호연결적이며 상호의존적이고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가 박탈된 때에 인간은 세계인권선언이 자유로운 인간 이상으로 간주하는 인간일 수 없다(유엔 총회 결의 421호)."

국제인도법 위반의 방지조치에 관한 일 고찰

임 태 근
국제법학 박사

머리말

국제인도법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써는 무력충돌에 있어서의 국제인도법의 위반을 평시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방지수단으로써는 첫째,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국제인도법의 존중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 즉 실시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국제인도법의 존중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체약당사국의 군대구성원에 대한 교육, 자격요원의 양성, 일반국민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주지시켜 국민의 무지를 방지하여 국제인도법의 준수를 촉구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국제인도법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국가가 국제인도법의 존중을 촉구하기 위한 제장치 즉 국내적 방지수단인 군지휘관의 의무, 전문요원 및 법률고문의 역할과 국제인도법의 보급 및 교육에 대한 제네바제협약 및 추가의정서상의 규정을 검토하고 적십자사 및 각국가의 보급노력을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화의 갈등

현대화에 대한 모든 이론은 현대사회에로의 전환이 이따금 혁명 및 폭력과 같은 갈등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일치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급 갈등을 역사변화에 대한 원동력이라고 보고, 계급을 생산수단에 대한 관계로 정의한다. 또한 대부분의 이론들은 현대사회가 결국 가장 발전된 단계에 이르게 되면 갈등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남은 갈등 부분은 제도화 되어 세련된 형태로 흡수된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경우가 그렇게 될 것인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대문명이 안고 있는 모순은 과거의 역사에서 물려 받은 모순에 추가되어 더 큰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세계의 생존문제

현대사회가 제기하는 가장 심각한 의문은 전 세계적인 것이다. 선진국가와 개발도상국간의 간격은 줄어들기 보다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와 함께 현대 이전 부터 갖고 있는 민족국가들간의 오래된 경쟁상태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반면, 기술발전은 인간의 환경을 파괴하려고 위협한다. 현대문명은 본질적으로 전 세계적인 것이다. 따라서 현대문명은 보편적인 가치를 근거로 모든 인류를 위해 전 세계적인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 만약 인간이 생존하기를 바란다면 자신이 창조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명이 필요로 하는 사회질서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인권의 역사적 발전상황

"인권(Human Rights)" 이라는 표현은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창설 시점 부터 매일 같이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것은 "자연적인 권리(Natural Rights)"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부분적으로는 그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자연법(Natural Law)"의 개념이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문제가 되어 선호되지 않았고, 그후에 등장한 "The Rights of Man"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uman Rights"가 등장한 것이었다.

인권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권개념의 역사적 근원을 고대 그리스 및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 그리스의 제노(Zeno)에 의해 시작된 철학으로서, 모든 생명체에는 보편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인간의 행동도 자연법칙에 따라 판단되고 그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스토아 학파의 현대 이전의 자연법 이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본다. 그리스 문학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예는 안티고네(Antigone)가 크레온(Creon)으로 부터 죽은 오빠를 파묻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고 질책을 받았을 때, 그녀는 신들이 허용한 불멸의 법칙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함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변호했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가 자연법의 등장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결과, 로마의 법률 또한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국제법(jus gentium)의 원칙에 따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초월하는 어떤 보편적인 권리를 인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로마의 법률가 울피안(Ulpian)은 자연법이란 국가가 아닌 자연(Nature)이 로마 시민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에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연법 이론이 자연권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치이론과 가깝게 밀착된 것은 중세 이후에 들어와서 였다. 그리스 로마와 중세의 자연법 이론은 주로

"인간(Man)"의 권리와 구별되는 의무를 강조했다.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의 저술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러한 이론들은 노예제도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서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인간권리의 가장 중심적인 관념인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제외시켰던 것이다.

인간의 권리 즉 자연법상의 권리가 일반적인 사회적 필요와 현실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의 신념 및 실천에 있어 약 13세기에서 부터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 조약, 르네상스에서 부터 봉건제도의 붕괴에 이르는 기간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의 등장을 필요로 했다. 종교적인 억압과 정치.경제적인 예속상태에 대한 저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유와 평등, 특히 재산의 이용과 소유에 있어 자유와 평등이라는 자유주의적 관념으로 전환시키게 됐을때 오늘날 이야기하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기초가 진정으로 닦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기간 중 르네상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개인적인 표현과 속세적인 경험에 대한 집착과 함께 지배자가 자연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의무로서의 자연법에서 권리로서의 자연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유럽대륙에 있어 토마스 아퀴나스(1224/5~1274)와 유고 그로티우스(1583~1645)의 주장, 그리고 영국에 있어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1628년의 권리청원, 1689년의 권리장전은 이러한 변화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은 양보할 수 없는 불멸의 권리를 부여 받았다는 것과 인류가 원시적인 상태에서 사회적인 상태로 들어가기로 "계약"했을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왕들의 신성한 권리"에 대한 주장 때문에 축소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를 점점 더 확산시켰다.

하지만 자연법의 이러한 현대적인 개념이 당연한 권리를 의미하거나 내포하고 있다고 구체화 시킨 것은 주로 17세기와 18세기에 들어와서 였다. 17세기의 과학 및 학문적 성과인 갈릴레오와 뉴톤의 발견, 토마스 홉스의 유물론,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의 이성론, 스피노자의 범신론, 베이콘과 존 로크의 경험론 등은 자연법과 보편적인 질서에 대한 신념을 고무했고, 이른바 "계몽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8세기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완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커짐으로써 좀더 종합적으로 표현됐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자연법 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17세기 영국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의 저술과 몽테스큐(Montesquieu), 볼테르(Voltaire), 루소

(Rousseau)와 같은 파리를 중심으로 한 18세기 철학자들의 책자들이다. 로크는 주로 1688년의 명예혁명과 관련된 책자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1) 일정한 권리는 인류가 시민사회로 들어가기 이 전의 "자연상태"때 부터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로서의 개인에게 당연히 귀속한다는 것, 2) 그러한 권리 중에 중요한 것은 생존에 대한 권리, 전제적인 지배를 받지 않을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라는 것 3) 인류가 "사회계약"에 따라 시민사회로 들어갔을 때 인간은 그러한 권리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만 국가에 이양한 것이지 권리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 4) 그리고 국가 자체는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국가가 그러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게 되면 국민은 혁명의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고 했다. 로크와 기타 사람들을 근거로 한 철학, 모두가 이성에 대해 최고의 신념을 표시하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사상 조류를 받아 들인 철학자들은 종교 및 학문적인 교조주의, 일방적인 강요와 금지,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제한에 대해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들은 양보할 수 없는 "인간권리(Rights of Man)" 이론을 비롯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원칙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 따라서 인권은 그들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진리의 근본이 되었다.

이 모든 자유주의의 학문적 열기는 당연히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기의 서양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1688년의 영국 혁명과 그로 인한 권리장전의 실제적인 예와 함께 자유주의는 당시 주로 북미와 프랑스를 휩쓸고 있던 혁명봉기의 물결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됐다. 로크와 몽케스큐를 탐독했던 로마스 제퍼슨, 미국 국민들은 "왕의 선물로서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서 유래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유인"이라고 주장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1776년 7월 4일 13개 미국 식민지가 채택한 독립선언문에서 17세기의 평범한 어구에다가 시적인 아름다움을 더하여,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고, 하느님으로 부터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에의 추구라고 하는 일정한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잔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조지 워싱톤의 절친한 친구로서 미국 독립전쟁의 이려움을 같이 나눈 라파이에트(Marquis de Lafayette)는 1789년 8월 26일의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영국 및 미국혁명의 선언문을 따랐다. 그 선언문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

표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불가침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인했고, 그러한 권리들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했으며,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한 권리,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으로 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했다. 이것은 마치 1791년의 권리장전에 대한 추가 사항, 그리고 1787년의 미국헌법 내용을 예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진 인권에 대한 관념은 정치적 절대 군주주의에 대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기의 투쟁에 있어 중요한 역활을 했다. 이렇게 발전된 요인은 지배자가 사실상 시작에서 부터 자연법 이론의 중심이 되는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았다는데 있었다. 대표적인 인권 연구가인 모리스 크랜스톤(Maurice Cranston)의 말과 같이, "절대 군주주의가 거부했기 때문에 인권 또는 자연적인 권리에 대한 주장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하지만 당연한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에 대해서는 받아 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선 첫째로 자연법적인 권리 이론은 자주 종교적인 정설과 결부되었기 때문에 철학적,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점점 더 받아 들이기가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그것들은 "양보할 수 없는", "변경될 수 없는", 아니면 "영원한" 등의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점점 더 서로 간에 충돌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법적인 권리 이론이 우익과 좌익 양쪽으로 부터 강력한 철학적, 정치적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보수주의자들인 에드먼드 버이크(Edmund Burlke)와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자유주의자인 제레미 밴담(Jermy Bentham)과 자연법적인 이론을 공격하는데는 일치했지만, 전자는 자연법적인 권리의 일반적인 확신이 사회적인 봉기를 초래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고, 후자는 당연한 권리로서의 각종 선언문이나 발표문이 효과적인 입법 활동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었다.

자연법의 신봉자면서도 "인간의 권리"는 자연법에서 유래된다는 것을 거부한 버이크는 1790년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에서 프랑스 인권선언의 초안자들을 비판하여, 인간에 대한 평등의 "괴상한 허구"를 선언하여 "힘겨운 인생의 암담한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인간에게 잘못된 관념과 허황된 기대"를 불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공리주의 창시자 중의 한 사람

이면서 자연법을 믿지 않았던 밴담의 공격 또한 그에 못지 않았다. 그는 "권리란 법률의 산물"로서, 현실적인 법률에서 현실적인 권리가 나오는 것이지, 환상적인 법률인 "자연법"에서는 환상적인 권리만 나올 뿐이라고 썼다. 따라서 자연법적인 권리는 단순히 넌센스일 뿐, 미국의 표현과 같이 "당연하고 침범할 수 없는 권리"는 수사학적인 넌센스, 허황된 넌센스라는 것이었다. 흄도 밴담에 동의하여 자연법과 자연법적인 권리는 비현실적인 형이상학적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18세기 말에 시작된 자연법 그리고 자연법상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19세기와 20세기의 초에 격화되고 확대됐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는 궁극적으로 유효성을 기초로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법률가 사비니(Friedrich Karl Savinig)와 영국의 헨리 메인 (Sir Henry Maine), 그리고 기타의 역사학파들은 권리란 특정 사회의 특수한 문화 및 주변 변수와 연관됨을 강조했다. 또한 법률가 존 오스틴(John Austin)과 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은 토마스 홉스의 주장 처럼 "군주의 명령"만이 법률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모든 진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경험에 의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자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를 자연법 노선에 따라 옹호하려 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이론가는 거의 없이지게 됐다. 사실 19세기의 독일 이상주의, 그리고 그에 병행한 유럽 민족주의의 등장 상태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개인권리를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권리란 어디에서 유래됐건 일차적으로는 공동체, 아니면 전체 사회 및 국가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영국의 이상주의자 브래들리는(F. H. Bradley)는 1894년에 "개인의 권리는 오늘날 심각하게 고려할 가치가 없다. …… 왜냐하면 공동체의 행복이 목적이고 최종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썼던 것이다.

하지만 자연법상의 권리에 대한 전성기가 짧았다고 해도 인간의 권리에 대한 관념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었다. 19세기의 개혁주의 산물인 노예제도의 폐지, 공장관계 법률 제정, 국민교육, 노동조합운동, 보통선거권을 위한 운동 등의 예는 인간권리에 대한 이념이 초경험주의적인 유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의적이었다고 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좋은 증거가 되었다. 그러나 권리에 대한 관념, 인권개념이 진정으로 재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나

치독일의 부상과 몰락 이후였다. 유태인과 기타 소수민족의 재산몰수 및 학살을 합법화 시키는 법률, 경찰의 임의적인 수색과 체포를 허용하는 법률, 공개재판 없이 구속과 고문 그리고 처형을 묵과하는 법률 등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법률들은 법과 도덕성이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리주의나 이상주의, 아니면 기타의 결과론적인 원칙에 근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되찾게 했다. 일정한 행위는 무어라 해도 잘못된 것이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적어도 존중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법률가·철학가·윤리학자들은 모든 인간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문화나 문명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동의한다. 인권학자 루이스 헨킨(Louis Henkin)의 말과 같이, 20세기 후반기에 있어 청교도 혁명의 후계자, 그리고 영국, 미국, 프랑스, 멕시코, 러시아, 중국혁명의 후계자들은 "원칙상 근본적인 인간권리를 모두 수용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인권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국가는 없다." 사실 나중에 언급되는 것과 같은 국제적인 인도주의의 관심에 있어 근본적으로 예외에 속했던 19세기의 일부 현상을 제외하고는 20세기 후반기에 와서 인권은 국제적인 인정과 함께 세계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유엔을 창설하는 조약에서 모든 회원국들은 "인종과 성, 언어와 종교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세계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공동 및 개별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또한 1948년의 「세계 인권선언」에서 여러 다양한 문화의 대표들은 거기에 포함된 권리가 "모든 국민과 모든 민족에 대한 공통된 기준"임을 확인했고, 1966년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에 대한 협약"과 "국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협약"은 1976년을 기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인권의 개념 정립

국내 및 국제분야에서 인권의 원칙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한 권리의 성격이나 내용의 범위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인권의 정의에 대해 완전히 견해가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일부에 대해서는 결론적인 대답을 기다려야 한다. (1) 인간의 권리는 산으로 부터 부여 받은 것인지, 도덕적인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인 것인지의 여부, (2) 인간권리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직관인지, 관습인지, 사회계약 이론인지, 분배 정의의 원칙인지, 아니면 행복의 전제조건으로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 (3) 인간의 권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4)인권의 범위와 내용은 넓혀야 하는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등, 이와 유사한 문제는 계속 논의되는 사항들로서 공공질서와 자원부족의 해결방안에 대한 방법이 일치되지 않는 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인권의 성격

하지만 이러한 합의점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광범하게 수용되고 서로 연관되기도 하는 여러가지 입장은 인권을 정의하는데 있어 완전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섯가지가 두르러진 입장이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첫째로, 인권은 그것의 궁극적인 근원이나 정당성에 관계없이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 권력, 재산, 교육 그리고 기타의 소중한 가치를 결정하고 나누는데 대한 개인 및 집단의 요구,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는 그러한 모든 가

치의 추구에 있어 공동체의 구성 부분에 대한 존중의 가치, 상호 인정, 그리고 상호 자제를 의미한다고 이야기 된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는 그러한 가치의 실현을 방해하는 인간 및 제도에 반대하는 권리,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의미를 갖게 되어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주변환경의 변화, 세계관의 차이, 그리고 가치 내부 및 상호간의 피할 수 없는 의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인권은 가장 정당한 것에서 부터 가장 바람직한 것에 이르는 가치 주장의 광범한 범위를 의미하고있다. 인간의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와 도덕적인 권리질서 모두를 의미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인권은 인간 문제의 "현재상태(is)"와 "당위성(ought)" 양쪽 모두를 지칭한다.

세째로 어떤 권리가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권리는 본질적으로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성질을 자져야 함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 어떤 경우에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포함하는 모든 인간존재가 평등하게 소유하는 것이이야 한다. "왕의 신성한 권리"및 기타 유사한 특권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권은 이론상 실제적인 가치에 따라 구별되지 않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네째로 인권에 대한 주장의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어떤 특수한 입장에 있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비슷한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만큼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게 될 경우, 인권은 어떤 때 "전제가되는(prima facie)"권리의 의미를 갖게 되어 절대적인 용어로 생각하거나 이야기 하는 것은 별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 다섯번째로서, 인권은 보통 약간 모호한 의미에서 "필수적이 아닌" 권리나 "자격"과 구별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사실상 일부의 이론가들은 인간의 권리를 하나나 두개의 핵심적인 권리, 이를테면 생존에 관한 권리나 기회균등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 축소시키려 한다. 간단하게 말해 그러한 경향은 "단순한 기대"의 의미를 축소하고,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마지막 입장은 몇개의 중요한 점에서 의문에 답하기 보다는 더 많은 의문을 제기시키는 것이다. 권리가 "기본적인"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

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오직 어떤 최소한의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좀 더 큰 것을 받아 들이는가?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입장은 아무리 정확성을 기하려 해도 인권의 내용과 적절한 범위에 대해, 또한 여러개가 있을 경우 그 가운데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많은 것이다. 인권의 근원과 정당성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차적인 인권에 대한 검토로서는 하나도 분명한 것이 없다.

인권의 내용

인간권리의 전통은 어떤 규범적인 전통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산물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권에 대해 내용과 형태를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떤 시점에 있어, 또한 과거의 축적 문제에 있어 역사의 연속 및 변화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내용과 적절한 범위,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우선순위 주장에 대한 논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시작 이후 인권의 전통에 대해 영향을 끼친 주요 사상과 행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은 프랑스의 법률가 카렐 바사크(Karel Vasak)가 제기한 "인간권리의 3단계론"이다. 그것은 프랑스 혁명의 세가지 구호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서 첫번째 단계는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 제 2단계는 평등의 경제·사회, 문화적인 권리, 마지막 제 3단계는 새로이 우애(fraternite)라고 하는 단결 또는 연대(solidarity)에 대한 권리이다. 바사크의 유형은 지극히 복잡한 역사적 기록의 단순화된 표현인 것임은 분명한 것으로서, 하나의 단계는 다음 단계를 낳게 하고 없어지는 문자 그대로의 생명체에 대한 표현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

〈제 1단계〉

국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제 1단계는 주로 앞에서 언급한 17세기 및 18세기의 개혁이론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의 혁명과 연관된 것이다. 그것은 자유주의의 개인주의 정치철학과 자유방임주의의 경제 및 사회 이론에서 영향을 받아 인간의 권리는 무엇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 보다는 무엇으로 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데 있어 정부의 개입 보다는 자제를 선호한다. 멘켄(H. L. Menken)이 말한 이른바 "모든 정부는 당연히 자유에 배치된다."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제 1단계에 속하는 권리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제 2조-21항에 규정된 권리들로서 인종 및 그와 유사한 형태의 차별로 부터의 자유, 인간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권리, 노예 기타 자발적이 아닌 예속상태로 부터의 자유,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치우 또는 처벌로 부터의 자유, 임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으로 부터의 자유,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 및 통신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의시 표현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직접 또는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여기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되는데, 미국 및 프랑스 혁명의 근본적인 관심사항 이었고, 자본주의가 등장하는 기초가 된 것이었다.

이러한 제 1단계의 권리들은 전적으로 "적극적인"권리에 반대되는 "소극적인"권리의 관념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인간의 안전에 대한 권리,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에 대한 권리, 잔인한 형벌로 부터의 보호, 그리고 자유로운 선거의 권리 등은 분명히 정부의 어떤 긍정적인 행동이 없으면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제 1단계 권리의 개념에 공통적인 것은 자유(Liberty)의 의미로서, 정치권력의 남용과 오용에 대해 단독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연관된 개인이든, 개인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라는데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 오늘날 거의 160개에 달하는 국가의 헌법 대부분이 받아 들이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채택된 국제적인 선언 및 협약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이러한 권리는 근본적으로 서양의 자유주의적인 인권개념

으로서, 어떤 때는 헤겔의 국가주의에 대해 홉스 및 로크의 개인주의의 승리라고 미화되기도 한다.

〈제 2단계〉

제 2단계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는 19세기 초 프랑스의 생시몽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된 후, 혁명투쟁과 사회복지 운동에 의해 다양하게 추진되어 온 사회주의의 전통에 주로 근원되고 있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 노동계급과 식민지인들의 착취를 묵인하고 합법화시키기 까지 한 자본주의 발달의 폐해와 오류, 그리고 그것의 밑에 깔려있는 개인주의적인 자유의 개념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국민의 정치적 권리라고 하는 제 1단계의 권리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소극적 의미 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데, 관련 가치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방임이 아니라 간섭을 요구한다. 대표적인 것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제 22조-27항에 열기된 것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실업으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권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의 과학, 문학, 예술작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다.

그러나 제 1단계의 정치적 권리에 포함된 권리 모두가 "소극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 2단계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권리에 포함된 모든 권리 또한 "적극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기는 이렵다. 예를 들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동조합의 결성과 참여에 대한 권리,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 2단계 권리들은 일정 기준의 분배정의에 따라 무형의 가치 보다는 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에 있어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한다. 제 2단계의 권리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의 영향력이 국제관계의 결정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의 국제화는 약

간 늦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 3세계의 국제 무대에로의 등장과 함께 "기대 상승에 대한 혁명"이 커짐으로써 현재 일반화 되기 시작했다.

〈제 3단계〉

마지막으로 제 3단계의 단결 또는 연대(Solidarity)에 대한 권리는 앞에서 언급한 두가지 단계의 가치가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고 있고, 연관되어 있으며, 그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으로서 아직도 형성단계에 있는 것이지만, 20세기의 후반기에 있어 민족국가의 등장과 쇠퇴 양측의 산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모든 인류는 세계 인권선언의 28조를 필두로, 현재까지 여섯가지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고, 이 선언문에서 규정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게 하는 사회 및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의 세가지는 제 3세계의 민족주의 부상으로 인한 권력, 재산 그리고 기타 중요한 가치의 세계적인 재분배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 자결에 대한 권리, 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한 권리, 그리고 지구와 우주자원, 과학, 기술, 기타 정보의 발전 결과, 문화적인 전통, 유적, 기념물 등의 인류 공동의 유산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잇는 권리이다. 제 3단계 권리의 나머지 세가지, 평화에 대한 권리, 깨끗하고 균형있는 환경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재난구제에 대한 권리는 어떤 결정적인 점에서는 민족국가가 무력하고 비능률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섯가지의 권리 주장 모두는 집단적인 권리 성격을 띄는 것으로서, 모든 사회세력의 통합된 노력과 어느 정도 전 세계적인 차원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고, 신성한 공동체의 이익 개념을 표출하는 유토피아의 가능성 추구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의 하나 하나는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인 민모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확립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대한 장애를 제기한다는 것은 모든 국가 및 국민들의 집단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물질 및 비물질적인 인간의 필요에 대한 충족을 기초로 하는 개발정책으로 부터 혜택을 입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권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결에 대한 권리와 인도주의적인 원조에 대한 권리

도 법률적인 면모와 함께 도덕적인 면모를 띄고 있고 연대성에 대한 권리의 대부분은 성질상 정당성 보다는 기대성을 더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제적인 인권규범으로서 불분명한 법률적 위치를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17세기와 18세기의 "부르조아"혁명, 20세기 초기의 사회주의 및 마르크스주의 혁명,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 직후에 시작된 반식민주의 혁명 이후에 해당되는 현대역사의 다양한 단계에서 인권의 내용을 광범하게 정의했지만, 그것은 제 1단계와 관련된 권리가 다음 단계의 등장과 함께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거나 보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가치가, 어떤 시기에 가장 절실하게 추진되고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인식이 변화되는 것을 반영하여, 인권의 내용에 대한 역사 또한 발전과 안정에 대한 인류의 반복적인 요구를 반영하게 된다.

인권의 범위와 우선순위

이것은 세가지 단계의 권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거나 아니면 모두 또는 일부가 똑같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제 1단계의 주장자 들은 인권의 정의에서 제 2, 제 3단계의 권리 전부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것들은 "차후적"인 것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 나타나는 복잡성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의 존재 보다는 배제를 강조하는 제 1단계의 권리에 따르는 좀더 큰 가능성의 시사는 어떻든 인권의 종합적인 개념규정에 대한 전제조건이 된 결과, 희망적이면서 모호하게 주장되는 권리는 전혀 권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좀더 이데올로기적이기나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는 설명이다. 제 1단계의 권리 주창자들은, 특히 부자에 대한 평등주의 요구가 집단적으로 제기될 경우, 자유와 자격에 대한 극심한 제한이 없으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에서(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사적으로 소유한 자원의 재분배를 위해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기 때문)인권은 본질적으로 시민사회와 무관한 것이고, 개인주의적이라는 견해에 기울어 진다.

이와 반대로 제 2, 제 3단계의 주창자들은 적어도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제 1단계의 권리들은 자주 인간의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또한 불공정한 국내의 사회질서 그리고 국가간 또는 국제적인 사회질서를 합법화시키는 도구로, 따라서 "부르조아적인 환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본다. 그 결과 그들은 인권에 대한 개념정립에서 제 1단계의 권리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권리의 위치를 낮추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근본적인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점차적으로 실현되는 장래의 어떤 시점에서나 달성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로 취급한다.

한마디로 말해 권리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 특히 새로 등장하고 있는 개념들은 서로 정통성과 우월성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그것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정치 및 사회체제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인간권리의 적절한 범위에 대해, 또한 그 중에서 주장되는 우선 순위에 있어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다.

하지만 인권 주장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대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적인 주장은 결국 위험스러울 정도로 잘못 발전될 수가 있다. 분명히 그것은 어떻게 하여 자유와 개인주의 개념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합리화시키고 있고, 합리화시키는데 이용돼 왔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고, 또한 어떻게 평등과 집단주의 개념이 권위주의적인 지배에 대한 구실이 될 수 있고, 되이 왔는지를 조명하는 점에서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현재의 전 세계적인 인권운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경우 고려되어야만 하는 적어도 세가지의 근본적인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첫째, 범위와 우선순위의 일반적인 규명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정치적 신뢰성과 배타적인 가치의 방어 가능성을 무너뜨리기가 쉽다. 점점 더 상호 의존적이고 영향을 주고 받은 세계사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인간존재가 갖고 있는 가치 모두를 가능한 한 광범하게 인정하고 나누어 갖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인권주장은 광범한 회의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한 성격규정은 행동에 있어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문화적인 전통 및 이데올로기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본적인 가치의 균형있는 생산과 분배에 대한 주장

이 늘어가고 있고 우세해 지고 있다.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 부터의 자유, 그리고 공포로 부터의 자유는 이 점에서 초기단계에 속한다. 좀더 최근의 표현은 당시 미국무장관이었던 싸이러스 밴스(Cyrus R. Vance)의 1977년 「법의 날」 연설로서, 그는 "인권향상을 우리 외교정책의 중심 부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미국정부의 결의를 표명하고,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정부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식량,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필수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정치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사회가 일정한 집단주의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장려까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집단주의 사회 또한 일정한 개인주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장려하기 까지 한다. 현재의 우리 세계는 정도의 차이일 뿐, 이것 아니면 저것인 세계는 아니다.

마지막 세번째 현재 활동하고 있는 어떤 국제 인권기구도 그들이 표명하는 권리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대해 유효하다고 하는 어떤 제안을 한바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생명의 박탈로 부터의 자유, 고문이나 비인간적 또는 비열한 처우 및 치벌로 부터의 자유, 노예상태로 부터의 자유, 채무로 인해 수감을 당하지 않을 자유 등과 같은 권리는 불가분한 것이고, 따라서 다른 어떤 것 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법률가와 윤리학자, 그리고 정치학자들 사이에는 인권의 적용문제에 있어 주장하는 권리의 범위와 순위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일정한 국민의 정치적인 권리의 보장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선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행복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러한 의견차이는 정치적인 문제에 속하는 것으로서 개념상의 가치는 적다. 유엔총회가 계속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인간의 권리 모두는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다양한 인권범위와 우선순위 주장은 전후관계의 문제이다. 세계의 다양한 장소에 살고 있는 인간은 여러가지 다양한 절차와 범위에 따라 각기 다른 인권을 요구하고 받아들임으로서, 인권문제는 궁극적으로 시간과 장소, 배경 및 위험 수준, 그리고 기타의 주위 여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빛두레기획

시대의 변화와 인권 (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인권위 제공

지난 4월 초, 국내의 한 방송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시사물을 방송했다. 이 방송에는, 이웃집으로부터 아동학대를 신고받아 출동한 경찰에게 아이의 부모가 '왜 남의 집안 일에 간섭이냐,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 너는 네 자식 혼낸 적 없느냐'는 요지로 반응했던 사례가 실렸다. 이런 전통적인 부모의 입장이 옳은지 그른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던 시청자는, 아동학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진행자가 언급하는 것을 들으며 끝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방송이 있던 거의 같은날 태국의 방콕에서 진행중이던 한 국제회의에서는 중국의 대표와 북한의 대표 등 소위 인민의 국가 대표들이 '인권은 국내문제다, 우리나라 인권문제는 우리가 책임진다, 왜 (서방국은) 남의 나라 일에 내정간섭하느냐, 지금까지 서방국가들도 인권침해를 해왔다.'는 요지로 발언해서 국제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한겨레신문 등 '민족주의'적 신문은 이 국제회의가 목표로 했던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등의 가치보다는 이들 몇몇 아시아국가들의 서방비판을 더욱 중요하게 또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이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일간 - 한국에서는 언론의 외면을 받은 채 - 방콕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아시아지역 회의」에 관계된 일이다.

내정간섭과 주권존중

하나는 어떤 작은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며 다른 하나는 내노라는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주의깊은 관찰자라면 두 사례에서 나타난 사고구조에서 놀랄만한 유사함을 간파할 것이다. 논리적 대비를 하자면, 「아동학대」는 「인권문제 일반」에, 「집안 일」은 곧 「국내 일」에, 「자식 교육」은 「내정」에, 「집안일 간섭」은 「내정간섭」에, 「내 자식 내가 키운다」는 주장은 「주권 존중」에 대비된다. 따라서 「집안」 혹은 「국가」 혹은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만 본다면 인권에 대해서 '내정간섭 말라'라는 입장뿐만 아니라 자식을 학대한 부모의 가정에 대해서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공동체 이전의 개별 사람의 존엄성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소위 인민의 국가의 대표들의 위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족공동체 역시 인권침해의 성역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인권앞에서 공동체는 일정한 '간섭'을 받아야 한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실제로, 유엔이 냉전이후의 시기에 세계평화를 꿈꾸며 야심차게 계획한 이번 「세계인권대회」(올해 6월 비엔나에서 개최 예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치열한 논쟁점은 바로 인권의 보편성 문제이며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인권을 빙자한 내정간섭'에 반발하며 '주권 존중'을 내세우는 독재국가 정부들의 '탈선행위'들이다.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찬찬히 생각하면 미국의 월남 침공, 그라나다 침공, 걸프전 도발과 이라크인 대량학살 등 강대국의 대량 인권침해에 대해서 무력하기만 국제기구가 약소국이나 사회주의국가들의 인권문제를 트집잡는 것은 패썸하기만 하다. 그러나 「주권 존중」「내정 간섭 반대」등 똑같은 논리로 독재국가들이 자국내의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작태 역시 어여뻐 보기는 힘들다. 더구나 이 지점까지 오면 무엇이 「국가」이고 무엇이 「국가주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새로운 평화관의 출발점

그러나 역으로, 이러한 고리타분한 논쟁은 바로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만일 인류가 새롭게 구성해야 할 질서가 평화지향적 질서라면 공격적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당연 새로운 질서형성주체에 대해 먼저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냉전시대에 '평화'의 구성주체는 단연 국가였고 국가간의 평화는 곧 강대국의 협박체제였다고 회고할 수 있다. 또, 냉전시기 국가를 움직인 정신적 힘은 여러 수준의 국가(민족)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데, 파시즘으로 극에 달했던 국가의 념을 통해서 볼 때, 좌우대결 시기의 국가이념은 사회심리적 기원의 반노동자 정서와 민족주의였고, 정치적으로는 국가의 절대화, 수단화였고 경제적으로는 국가경제 발전의 절대화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파도기인 지금, 새로운 질서의 모색은 당연히 이와 같은 국가의 파잉에 대한 반테제를 내오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 아닐까.

이에 동의한다면, 탈냉전의 새시대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집착보다도, 보편적이고 평등한 인간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고로 평등한 인간들 사이의 계약 즉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심은 새로운 평화관의 출발점일 수 밖에 없다.

빛두레

빛두레 기획

시대의 변화와 인권(2)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인권위 제공

냉전, 대결, 핵전쟁의 위협, 이념갈등, 전쟁, 증오, 경제발전... 다음 시대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떠오르는 과거(?)의 말들이다. 참으로, 변화하는 시대는 침착한 역사의 관찰자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용공!" "불순분자!" 하면서 거의 발작을 일으켰던 과거의 공안당국자들, 온갖 반공집회에서의 집단적 정신분열증, '국가'를 위해 자유를 유보해야 한다는 교회장상의 고집 등을 회고하면 한편으로는 꼭 두각시들의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같기도 하지만, 아직도 고난받고 있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면 이 냉전옹호자들이 수호하려고 했던 국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하는 참담한 생각에 이른다. 도대체 국가가 무엇이길래 지구를 수십번 파괴하고도 남을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살상과 고문이 수십세기 동안 자행되는 동안 견제되지 않았던 것일까? 과연 현재를 이성과 문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대한민국사를 요약해 보자. 미군정 - 친미친일파의 건국 - 군사독재 - 수출전략과 경제발전 - 민주화운동의 폭발. 이렇게 해서 다다른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한편 오래된 부정부패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개방을 앞둔 경제를 염려하면서 동시에 외국인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고 죽이고 쫓아내고 있고 꼭 과거 일본처럼 외국에 공장을 짓고 그 나라 어린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 - 이 모든 것을 '경제기적이여 다시 한번!'이라는 계명으로 정당화하며. 이런 점에서 **우리의 '국가'는 외세에 의해 만들어진 그대로 외지의 타민족을 수탈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역사가 뿌리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 국가의 뿌리는 참으로 걱정스럽다.

그러나, 걱정에 함몰되기전에 이 분단국가가 경제발전논리로 국가통합을 시도했던 과정을 다시 뜯어보자. 지금까지 사회지배층의 경제논리는 분명히 서민경제의 발전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발전이 그 본질이었다. 그리고 이 국가경제발전모델에는 「적」과의 생존경쟁과 노동력이 근본이었는데 이를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도구화되었다. 이 노동의 도구화를 위해 '민족중흥'이념이 사용되었다. 또 민족의 위대함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족문화'에 대한 애착이 강조되었다. 이 때 우리전통문화의 미덕은 충, 효, 공동체, 단결 등 모두 「권위」에 관계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45년 역사에서 「권위」는 남한의 모든 문화의 핵심에 자리잡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이 낡은 권위의 일부가 국가발전에 해가 될 만큼. 그러기에 현 정부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낡은 권위 일부와 그에 기생한 부패를 도려내지 않으면 안될 지경까지 되었다. 노동현장의 분위기로 접근한다면, 이제 그런 불로소득과 부정부패를 다 아는 상태에서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노동이 동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경제발전이 힘들기 때문이다.

요약컨데, **발전모델 - 노동의 동원 - 국가 - 권위의 문화 : 바로 이것이 인권문제의 본질이다.** 때문에 (한 예로서) 유엔에서 채택된 인권규약에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의 자유 등 중요한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외에도 평화와 인간다운 발전에 관한 권리를 별도의 조약에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권운동의 현실에서는, 인간다운 발전모델을 도외시한 인권문제란 그 사람의 무지를 증명할 뿐이다. 그렇다면, 인권에 대한 위선적이지 않은 관심은 현재 우리 사회의 발전모델(종속형 독점자본주의)과, 노동의 동원방식(거의 강제노역 + 외국인 노예), 국가(중앙집중형 절대국가), 권위의 문화(성, 신분, 나이, 직업, 재산)에 대해 동시에 또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국가권력과의 관계」,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남다른 역사를 갖고 있는 가톨릭교회로 오면 인권에 대한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더 어려워지는데 그 이유는 교계질서와 의사결정구조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따라서 반시대적인 질서개념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노동의 동원에 대해서 그리고 발전모델에 대해서 수세기동안 본질적으로 노동착별적 혹은 친자본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두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좋은 예로, 경인지역의 한 가톨릭병원에서 신입간호사를 채용할 때 수도자들이 직접 후안무치하게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하고 그의 심리적 압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들 수 있다. 발전모델과 노동의 동원, 그리고 기존 권위 - 즉 현 국가의 모든 것 - 에 문제제기하지 않는 관심은 값싼 동정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관심은 아니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 다음호에 계속

빛두레

벗두레 기획

시대의 변화와 인권 (3)

이대훈 (프란치스코,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간사

비록 많은 사람들이 과거지사로 간단히 여기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잊혀진 인권침해의 사례의 하나는 소위 「정신대」 희생자들이다. 이제 이들이 당했던 피해는 상당히 알려져 있다. 반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은 이들의 인권침해에 간여된 대한민국 국가의 역할이다. 물론, 아직도 일본정부와 국내의 일부 여론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대일 청구권이 종결되었으며 더 이상 일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리고 한일협정이 한일경제협력 즉 현대 한국의 경제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상기하면, 정신대 피해자의 문제는 바로 국가-인권-경제발전의 고리에 걸린다.

그러나 우선 법해석상으로, 노예상태의 인권침해사실과 그 책임이 국가간 협정에 의해 무효화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근본규범(국제사회 전체에 의하여 승인된 규범으로 유린될 수 없는 근본 권리)」의 효력이므로, 성적 노예상태에 있었던 정신대 피해자들의 경우 당연히 한일협정서에서 대일 청구권 포기는 국제법상 무효가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야만성과 그에 대해서 둔감한 한국이라는 국가의 원시성이다. 2차세계대전 중 각국이 전쟁중 자국의 정부가 병사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면 일본이 얼마나 뻔뻔스럽게 책임회피했는가를 알 수 있다. (물론 어느 강대국의 후원하에, 어떤 냉전논리로 이것이 정당화되었는가를 잊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나치관련자를 모두 150만명 처벌했을 뿐 아니라 나치 희생자들에게 지금까지 총 41조원의 배상금을 지불했고, 독일 민간기업들도 강제노역에 동원한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 독일 군대에 편입시켜 복무한 외국인에 대해서조차 원호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구 동독에 살았기 때문에 배상을 받지 못한 희생자들은 통일이후 새로운 입법에 의해서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독일민족이 착해서가 아니라 인권과 국제규범에 충실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정신대의 비극적 피해자들(최고 20만명까지로 추산됨)은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의 도움없이 '인격'의 회복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현대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물음으로 직결되며 이로부터 나아가 국가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도구 즉 "경제발전"이라는 우상숭배 이념으로 직결된다. 유럽의 시민혁명이 이룩한 인권의 도약은 봉건적 억압의 해체를 목표로 한 진보였으나, 그 이후 평등한 인간관계로 향하는 인류의 발걸음은 우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의견차이로(냉전), 다음으로는 민족간의 오래된 앙숙관계(최근의 민족분규들)로 인해 멈칫하고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역사를 딛고 인권이 증진되는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경제발전모델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전투기구매의 부정부패사건도 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지금까지의 경제발전 모델과 전쟁이나 군비증강이 얼마나 깊이 연관되었는가를 간파해야 하며, 또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경제발전모델의 설득이념으로서 '적'에 대한 적개심과 '부'에 대한 우상숭배가 끼쳤던 정신적 폐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국가보안법」과 「부동산투기」는 현대 한국사에 나타난 우상숭배의 최대 상징일 것이며, 때문에 70년대부터 지속된 세계사상 유례없이 격렬한 노동자투쟁과 인권운동의 파녁이었다. 바로 이 유별나게 역동적인 과정이 현재의 개혁을 강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탈냉전시기에 창조적으로 인권운동을 전개할 필요를 인식할 수 있으며 그 방향도 가늠할 수 있다. 유럽의 시민혁명이 재산을 가진자들의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면, 이제 파도기를 지낸 인류사회는 '검소한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이룩해야 한다. 과거의 시민혁명이 재산에 근거한 평등권을 성립했다면 이제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평등한 권리를 성립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가 자기정당성을 고속 경제발전에서 찾았다면 새로운 국가는 '노동의 가치'와 조화된 비공격적 발전모델로 정당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족에 중심을 둔 국가들이 전쟁과 군비증강에서 체제유지 방편을 찾았다면 이제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 인간관계 즉 인권규범을 통해 새 체제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인권운동은 평화·군축의 실현, 새로운 발전모델의 수립, 그리고 민주주의의 강화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평화-경제모델-새로운 질서」에 대한 전망을 상실한 인권운동은 미래를 갖기 힘들며 또 조그마한 개혁이라도 강제해낼 역동성을 갖기 힘들 것이다.

벗두레

세 계 인 권 선 언

전 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초는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 양심을 짓밟는 야만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그리하여 보통 사람들은 언론·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공포·굶주림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온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하는 선언을 낸 적이 있다.

사람이 전제와 탄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몰려서는 안 된다. 일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이 단단히 보장되고 있어야 한다.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가 날로 두터워지도록 힘쓴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국제연합의 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 국민은 기본적 인권·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남녀의 동등권이라는 것을 믿어 왔고, 국제연합헌장에서 그것들을 다시 확인했으며, 또 더욱 큰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사회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 일이 있다.

여러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범세계적으로 존중하고 또 지켜나갈 것을 서약한 일이 있다.

이 서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되는 이해다.

이상과 같은 여러 이유에 근거해서, 이제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인민과 국가가 도달하여야 할 공통의 표준으로 삼고자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그러니 각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의식하면서, 회원국 국민과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인민 사이에 다음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즉 교육과 교화를 통해 이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줄 알게 하고, 또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해 이 권리와 자유가 범세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지켜지도록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제 1 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理性)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 났으니, 피차 형제애의 정신으로 처신해야 한다.

제 2 조

사람은 누구나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를 모두 누릴 자격이 있다. 인종 · 피부색 · 성별 · 언어 · 종교 ·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신념 ·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 재산 ·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등을 이유로 하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각자가 속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건 신탁통치 지역이건, 비자치지역이건 또는 그 밖의 어떤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건,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 법적 · 국제적 지위를 이유로 하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제 3 조

사람은 누구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 4 조

아무도 노예의 처지 또는 노예적 처지에 묶여있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

제 5 조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6 조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또 아무런 차별없이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배되는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또는 그런 차별에 관한 교사(敎唆)에 대해서도, 같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사람은 누구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권한있는 국가법정에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아무도 함부로 체포 ·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 10 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 또는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관해 재판을 받게 될 때, 독립된 그리고 공정한 법정이 관장하는 공개심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1 조

1. 형사상 범죄와 관련하여 소추(訴追)당한 사람은 누구나, 공개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밝혀질 때까지, 무죄로 추정(推定)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추당한 사람은 그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아무도, 행위 당시에는 국내법상으로 또는 국제법상으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를 이유로 형사범으로서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않는다. 또한 그 형사 범죄가 행해졌을 때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지워지지 않는다.

제 12 조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집 또는 통신에 대해 함부로 간섭당하지 않고, 또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공격당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앞에서 말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해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국의 경계 안에서는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라도 떠나고 또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 14 조

1.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피해서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으로 되어 있는 소추 사건의 경우에는 이 권리가 해당되지 않는다.

제 15 조

1. 사람은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아무도 함부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않는다.

제 16 조

1.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남녀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이혼하게 될 때, 결혼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 당사자의 자유스런 그리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7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아무도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 18 조

사람은 누구나 사상 ·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

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강론 · 행사 · 예배 및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제 19 조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전달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제 20 조

1. 사람은 누구나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아무도 어떤 결사에 가입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제 21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나서서 또는 자유스럽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국에서 공무를 맡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인민의 의사는 통치 권력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 즉 보통 및 평등 선거권을 기반으로 하여 비밀 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스런 선거 절차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에서 표현된다.

제 22 조

사람은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해, 그리고 자국의 구조 및 자원에 알맞게 자기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스런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시킬 권리를 가진다.

제 23 조

1.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직업을 자유스럽게 선택하고,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누리고, 실업에 대해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알맞는 생활을 보장해 주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으로 보충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또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 조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노동시간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 25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건강 및 복지를 보장하는데 충분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생활수준에는 의식주·의료·필요한 사회적 시설의 이용에 대한 보장도 포함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실업·질병·능력 상실·배우자의 사망·노년 또는 불가항력에서 오는 그 밖의 생계 불능의 경우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자(母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결혼생활에서 태어났건 아니건, 똑같은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제 26 조

1.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기초교육의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고등교육은 능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인종 집단 또는 종교 집단간의 이해·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베풀어지는 교육의 종류 선택에 있어서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제 27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회의 문화생활에 참가하고, 예술을 감상하고,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창조한 과학적·문화적 또는 예술적 산물에서 생기는 유형·무형의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8 조

사람은 누구나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 29 조

1.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격의 자유스럽고 완전한 발전을 가능케 해주는, 사회에 대해 의무를 진다.
2. 사람은 누구나,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있어서 다음 제한을 받아야 한다. 그 제한이란, 주로 남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당한 인정과 존경을 보장하고, 또 민주사회의 도덕·공공질서·일반 복지에 요청되는 공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마련된 법률상 제한을 말한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과 상반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이 선언에 어떤 규정도, 특정 국가·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 및 자유 중 어느 하나를 파괴하고자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암암리에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

전 문

이 협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될 것으로 간주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인은 공포와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상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시민적 · 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달성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을 수락한 제국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도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 1 부

제 1 조(인민자결권)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그 천연 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해 자유로이 처분할 수가 있다. 이 때, 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적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의 생존 수단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3. 가맹국(비자치령 및 신탁통치령의 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한 자결권을 존중한다.

제 2 부

제 2 조(가맹국의 협약준수의무)

1. 각 가맹국은 자기 나라 가용(可用)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단독으로, 또는 국제적인 원조와 협력, 특히 경제적 및 기술적인 원조와 협력을 통해,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2.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선포된 권리가 인종 · 피부색 · 성별 · 언어 · 종교 ·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 재산 · 가문 · 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행사될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 및 자국경제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비자국인(非自國人)에게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

제 3 조(남녀평등)

가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누릴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4 조(공공복지에 의한 제한)

가맹국은 이 협약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국가가 그 권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 제한은 이 권리의 성질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또한 민주사회에 있어서 일반적 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5 조(해석 적용상의 주의)

1.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집단·개인에게 다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 권리란, 이 협약에 인정된 권리 또는 자유를 파괴하거나, 이 협약에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을 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 또는 행위를 벌일 권리를 말한다.

2. 어떤 나라에서 특정한 기본적 인권이 법률·조약·규칙 또는 관습으로 인정되거나(현실로)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또한 인정하는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못한다.

제 3 부

제 6 조(노동의 권리)

1. 가맹국은 노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에는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기회를 얻을 권리도 포함된다. 가맹국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가맹국이 노동의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는, 개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아래서, 착실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과 완전하고도 생산적인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훈련 계획·정책·방법이 포함된다.

제 7 조(공정·유리 노동조건 향유권)

가맹국은 누구나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특히 다음 항목을 보장하는 노동조건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a) 최소한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보수

(i) 공정한 임금 및 어떤 차별도 없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 특히 여자의 경우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과 함께 남자의 노동조건에 뒤떨어지지 않는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

(ii)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평균적인 생활.

(b)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조건

(c) 선임순과 능력 이외의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고, 누구나 고용관계 안에서 적당한 상급 지위로 승진하는 균등한 기회

제 8 조(노동기본권)

1. 가맹국은 다음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a)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또 해당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법률로 정해진 바로,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을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하지 못한다.

(b) 노동조합이 국내연맹 또는 총연맹을 결성할 권리 및 연맹이나 총연맹이 국제적인 노동조합 조직을 결성하거나 거기에 가입할 권리

(c) 법률로 정한 바로,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을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권리

(d) 파업권. 그러나 이 권리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2. 이 조문은 군, 경찰, 또는 국가행정기관 구성원의 전기 권리의 행사에 대한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3.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1948) 가맹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을 이 조문의 어떤 규정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 9 조(사회보장)

가맹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한다.

제 10 조(가정 · 어머니 · 어린이 보호)

가맹국은 다음을 인정한다.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다. 가능한 한 최대의 보호와 원조가 가정에 대해 주어져야 한다. 특히 가정의 형성을 위해 그렇거니와, 한 가정이 부양할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와 원조가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 결혼은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산전 산후의 상당한 기간동안 산모에게 특별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산모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유급휴가나, 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따르는 휴가가 주어져야 한다.
3. 출생이나 그 밖의 조건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돕기 위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어린이와 연소자의 정신 또는 건강에 해롭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그 정상적인 발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노동에 종사시키는 행위는 법률로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연령제한을 정해야 한다. 임금을 주어서 그 연령에 미치지 못한 어린이를 일 시키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고, 또 처벌되어야 한다.

제 11 조(사회권의 기본규정 · 일반규정 · 기아로부터의 자유)

1. 가맹국은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상당한 생활수준이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쓸 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가맹국은 이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합의에 근거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가맹국은 사람이 누구나 굶주림에서 벗어날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단독으로는 물론 국제협력을 통해, 다음을 이룩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식량의 생산 · 보존 · 분배의 방법을 개선한다. 개선의 방법으로는 기술적 및 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 영양원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것, 천연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 또는 개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b) 식량의 수입국과 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수요와 관련하여 세계의 식량 공급품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12 조(건강권)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가맹국은 조치를 취할 것인 바, 그 속에는 다음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저하를 위한, 그리고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을 위한 대책.

(b) 환경위생 및 산업위생의 모든 측면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 치료 및 억제.

(d) 병에 걸렸을 경우 누구나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창출.

제 13 조(교육받을 권리)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교육은 인격의 완성과 인격존엄의식의 온전한 개발을 지향해야 하고, 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심을 굳건하게 해야하는 바, 가맹국은 이 점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서 교육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스런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모든 나라와 인종 · 종족 · 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 및 우의를 촉진시킨다는 것,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연합의 활동을 권장한다는 것을 가맹국은 인정한다.
2. 가맹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목적으로 다음을 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인 동시에,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한 각종 중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널리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질 것.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이 이루어질 것.

(c) 고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 능력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그 기회가 주어질 것.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이 이루어질 것.

(d)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그 전(全)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될 수 있는대로 광범하게 기초교육이 장려 또는 강화될 것.

(e) 각급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절한 장학제도가 설치되며, 교원의 물질적 조건이 부단히 개선될 것.

3. 가맹국은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녀를 위해 학교를 선택해 줄 자유를 존중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란 공공기관이 설치하지 아니하되, 국가가 설정하거나 승인한 교육상의 최저기준에 합치하는 학교를 가리킨다. 또한 가맹국은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자녀의 종교교육과 도덕교육을 책임지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및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유를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언제나 1항에 제시된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또 그 기관에서 베풀어지는 교육이 국가가 설정한 최저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조건 아래서만 그러하다.

제 14 조(무상초등의무교육의 실시의무)

이 협약 가맹 당시에 본토에서는 물론이요, 그 통치하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무상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각 가맹국은 다음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즉 무상 의무교육원칙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상세한 행동계획을 2년 이내에 작성·채택하되, 합리적인 실시기간이 그 계획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 15 조(문화적권리)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다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a)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b)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c) 자기가 창조한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유형·무형의 이익을 보호받는 데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2. 가맹국이 이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이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중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전·발전·보급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3. 가맹국은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 벌이는 국제적 연락·협력의 장려 및 발전이 여러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 4 부

제 16 조

1.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함에 있어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보고를, 이 협약 제4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의무를 진다.

2.

(a) 모든 보고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검토를 위해 경제사회이사회 앞으로 그 사본을 보낸다.

(b)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또한 전문기구 회원국이기도 한 가맹국으로부터 온 보고의 사본 또는 관련부분을 전문기구 앞으로 보낸다. 그러나 이것은 그 보고 또는 보고의 일부가 그 전문기구의 기본문서에 따라 임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17 조

1. 가맹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가맹국 및 관계 전문기구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 이 협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보고를 단계적으로 제출한다.

2. 보고에는 이 협약의 규정된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장애를 기재할 수 있다.

3. 관련 정보가 가맹국에 의해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 앞으로 이미 제출되었을 경우, 그 정보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제출된 정보에 대한 명확한 언급만으로 족하다.

제 18 조

국제연합헌장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분야의 책임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지우고 있다. 이 책임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는 이사회 앞으로 보고를 보내주는 문제에 관해 전문기구와 사전 협의를 가질 수 있다. 그 보고는 협약 준수 촉진 활동에서 이룩된 진전에 관한 것인데, 그 활동이 동 전문기구의 활동 범위에 속해 있어야 한다. 전문기구의 권한있는 기관이 채택한, 협약 실시에 관한 결의 및 권고의 자세한 내용이 이 보고에 포함될 수 있다.

제 19 조

가맹국의 경우는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구의 경우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인권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검토와 일반적인 권고를 위해, 또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보용으로, 전기 보고를 인권위원회 앞으로 보내 줄 수 있다.

제 20 조

가맹국 및 관계 전문기구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일반적 권고에 대한 논평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보고가 그 일반적 권고를 인용하고 있을 경우, 또는 인권위원회의 보고에서 언급된 문서가 전기 권고를 인용하고 있을 경우, 그 언급에 대한 논평도 위와 똑같다.

제 21 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을 지닌 권고가 첨부된 보고와, 가맹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접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 정보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취해진 조치 및 이룩된 진전에 관한 것을 말한다.

제 22 조

이 협약 제4부에 규정된 보고로부터 어떤 사안이 제기될 경우, 경제사회이사회는 기술원조 제공에 관련을 가진 국제연합의 다른 기구, 그 보조기관 및 전문기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한다. 그 사안이란, 전기 기관이 각기의 소관 분야에서 이 협약의 효과적이고도 점진적인 시행에 도움이 될 만한 국제적 조치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는 것을 말한다.

제 23 조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국제적 활동 중에는 다음 방법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조약의 체결, 권고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관계국 정부와 협조하는 가운데 조직된 협의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회의와 전문가회의의 개최.

제 24 조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는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 및 전문기구의 임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의 규정을, 이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모든 인민은 그들의 천연 재화와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스러이 누리고 또 이용할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그 권리를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5 부

제 26 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가맹국이나 전문기구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국, 그리고 국제연합총회가 이 협약의 가맹국이 될 것을 요청할 그 밖의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1항에서 언급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을 통보한다.

제 27 조

1. 이 협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협약은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 28 조

이 협약의 조항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29 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여러 가맹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을 검토·표결할 가맹국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국제연합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해주도록 요청한다. 가맹국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를 찬성할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받기 위해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국제연합총회가 승인하고 또 가맹국의 3분의 2가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했을 때, 개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은, 효력 발생시에, 개정을 수락한 가맹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그 밖의 가맹국은 이 협약의 조항 및 그 국가가 수락한 그 이전의 개정에 의해 종전대로 구속당한다.

제 30 조

제26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통보와 상관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26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a)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제 31 조

1. 이 협약은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正本)으로 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26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협약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전 문

이 협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됨을 고려하고,

이 여러 권리가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에 유래함을 인정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인은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 공포 및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상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함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달성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을 수락한 제국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도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 1 부

제 1 조(인민자결권)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천연 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하여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이때, 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적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의 생존수단이 빼앗겨서는 안된다.

3. 가맹국(비자치령 및 신탁통치령의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한 자결권을 존중한다.

제 2 부

제 2 조(가맹국의 협약준수의무)

1. 가맹국은 그 영토 안에 살고 또 그 관할 아래 있는 모든 개인에게 대해, 이 협약에서 인정된 여러 권리를 존중해 주고 또 보장해 줄 의무를 진다. 권리의 존중과 보장에 있어서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두어서는 안된다.
2. 가맹 당시, 입법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를 통해 여건을 마련해 놓지 못한 가맹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이 협약에서 인정된 여러 권리를 실현시키려면 입법조치 또는 기타의 조치가 필요한 바, 헌법상의 절차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상기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한다.
3. 가맹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a)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나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것을 보장하는 일. 그 침해가 공적 자격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었을 경우에도 똑같다.
   (b) 구제조치를 구하는 사람의 권리가 관할권 있는 사법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 또는 그 나라의 사법체제에 따른 관할권 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장하고, 또 사법상의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일.
   (c) 구제조치가 허락되었을 경우, 관할권 있는 기관이 그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일

제 3 조(남녀평등)

가맹국은 남녀가 평등하게 이 협약에 설정된 모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릴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4 조(긴급사태하의 일탈(逸脫)조치)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긴급사태가 발생하고, 또 긴급사태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경우, 가맹국은 사태의 긴급성에 비추어, 필요한 한도 안에서, 이 협약에 따라 지게 되는 다른 의무에서 일탈(逸脫)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조치는 국제법에 따라 지게되는 다른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인종 · 피부색 · 성별 · 언어 · 종교 · 사회적 출신을 유일한 이유로 하는 차별을 그 속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1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 1항 및 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서 일탈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3. 가맹국 중 일탈권을 이용하는 국가는 일탈한 조항과 일탈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해 다른 가맹국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또한 일탈조치가 끝나는 날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해 그 사실을 다른 가맹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 5 조(해석적용상의 주의)

1.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 · 집단 · 개인에게 다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 권리란, 이 협약에 인정된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이 협약에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을 가할 것을 목적으로 활동에 종사 또는 행위를 할 권리를 말한다.

2. 가맹국은 특정한 기본적 인권이 법률 · 조약 · 규칙 또는 관습으로 인정되거나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인정하는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못한다.

제 3 부

제 6 조(생명권)

1.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 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2.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범행이 이루어진 당시의 시행 법률에 비추어 가장 중대한 범죄인 때에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은 이 협약의 조항 및 '집단학살의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 형벌은 관할권 있는 법원이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 박탈이 집단학살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가맹국이 '집단학살의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는 의무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일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양해한다.

4. 사형이 선고된 사람에게는 특사나 감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형선고에 대한 사면 · 특사 또는 감형은 모든 사건에 주어질 수 있다.

5. 18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임신중인 여자에게 사형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6. 이 협약의 가맹국은 사형폐지를 늦추거나 막기 위해서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원용(援用)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고문 · 인체실험의 금지)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 없이는 아무도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 8 조(노예 · 예속 · 강제노동의 금지)

1. 아무도 노예의 처지 또는 노예적 처지에 묶여 있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

2. 아무도 예속자로서 부림을 당하지 않는다.

3.(a) 아무도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

(b)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중노동이 따르는 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3항 (a)의 규정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의한 형벌의 선고로 중노동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한다고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

(c)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강제노동이라는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i) 3항 (b)의 규정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법원의 합법적인 명령으로 구금당하고 있거나, 조건부로 구금이 면제되고 있는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노동 또는 용역.

(ii) 군사적 성격을 띤 용역, 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적 용역.

(iii) 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해에 즈음해서 부과되는 용역.

(iv) 시민의 통상적인 의무로 여겨지고 있는 작업또는 용역.

제 9 조(신체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아무도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한 정해진 이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다.

2. 체포당하는 사람은 체포당할 때 그가 체포당하는 이유에 대해 통고받고, 또 자기의 혐의 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통고받는다.

3. 형법상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금당한 사람은 판사 또는 법률에 의해 사법권의 행사가 허용된 다른 관리 앞에 신속하게 인도되고, 또 타당한 기간 안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구치소에 구금당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석방에 즈음해서 재판 또는 사법적 절차상 그 밖의 단계에서의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한 출두가 보증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으로 자유를 빼앗긴 사람은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 절차가 목적하는 바는, 법원이 그 구금의 합법성에 관해 지체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그 구금이 합법적이 아닐 경우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5. 불법으로 체포 또는 구금당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0 조(수감자 처우)

1. 자유를 빼앗긴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으로서 타고난 존엄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다루어진다.

2.

(a) 기소당한 사람(미결수)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기결수)과 분리되고, 또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 지위에 알맞는 별도 대우를 받는다.

(b) 소년범은 성인과 분리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재판을 받는다.

3. 행형제도는 수감자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그 기본적인 목표로 삼는 수감자의 처우를 포함한다. 소년범은 성인과 분리되고, 또 그 나이와 법적 지위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제 11 조(민사구금의 금지)

아무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당하지 않는다.

제 12 조(이동 · 거주 · 출입국의 자유)

1. 합법적으로 한 국가의 영토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자유롭게 거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3. 1항과 2항에 규정된 권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국가의 안전 · 공공질서 · 공중위생 · 도덕 ·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이 협약에서 인정된 다른 권리와 상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4. 아무도 자국에 돌아오는 권리를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 13 조(외국인의 추방)

가맹국의 영토 안에 합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의거하여 내려진 결정에 따라서만 추방당한다. 국가의 안전이나 기타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외국인은 자신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고, 또 관할권 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이 특별하게 지명하는 사람에 의해 그 사안을 재심 받는 것이 허용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의 대리인을 출두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제 14 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사람은 누구나 형사상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거나 권리 · 의무에 관한 분쟁으로 재판을 받게 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관할권 있는, 독립된 그리고 편파적이 아닌 법정이 관장하는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도 기관 및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민주사회에서 인정된 도덕 · 공공질서 · 국가안보상의 이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사생활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 또는 그 공개가 사법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법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한도 안에서, 재판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이익이 걸려 있거나, 그 (소송)절차가 부부간의 분쟁 또는 어린이에 대한 후견과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사사건 또는 소송에서 내려지는 선고라 하더라도 공개되어야 한다.

2. 형사상 범죄와 관련하여 소추당한 사람은 누구나, 법률에 따라 유죄로 밝혀질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형사상의 범죄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누구에게나 남들과 똑같이 최소한 다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a) 본인이 알아듣는 말로 그가 받고 있는 혐의의 성질과 그 이유를 신속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고지(告知)되는 일.

(b)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과 편의가 제공되고, 또 자기가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가지는 일.

(c) 부당하게 지체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일.

(d) 본인이 출석하는 가운데 재판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가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방어하는 일.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고지되는 일. 사법의 이익으로 보아 변호인이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지불수단이 없는 경우에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일.

(e)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을 본인이 신문하거나(변호인으로 하여금) 신문케 하는 일. 본인에게 불리한 증인과 똑 같은 조건 아래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출석시켜 이를 신문하는 일.

(f)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의 도움을 받는 일.

(g)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당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일.

4. 미성년자인 경우 그 절차는 당사자의 나이와 갱생 촉진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선고와 형량을 법률에 따라 상급법정에서 재심받을 권리가 있다.

6. 확정 판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나중에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이 발견된 사실에 의해 오판이었음이 밝혀져서 그 유죄선고가 파기되었거나 사면이 베풀어졌을 경우, 그 유죄선고 때문에 복역하게 된 사람은 법률에 따라 보상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제때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본인의 잘못 때문이었음이 밝혀질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어떠한 사람도 그 나라의 법률과 형사 절차에 따라 유죄 · 무죄가 확정된 행위로 인해서 또다시 재판에 회부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제 15 조(소급처벌의 금지)

1. 아무도, 행위 당시에는 국내법상으로 또는 국제법상으로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범으로서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않는다. 또한 범죄가 행해진 당시에 적용되는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지 않는다. 범죄가 행해진 다음에 보다 더 가벼운 형벌을 가하기로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 범법자는 개정된 법률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2.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실행 당시에 범죄가 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어떤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하는 것을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막는 것이 아니다.

제 16 조(법률 앞에서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7 조(사생활 · 명예 · 평판의 존중)

1.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집 또는 통신에 대해 함부로 간섭당하지 않고 또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공격당하지 않는다.
2. 사람은 누구나 앞에서 말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해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8 조(사상 · 양심 · 종교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사상 · 양심 ·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예배 · 의식 · 행사 · 강론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2. 아무도 자기가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는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강제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3.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또 공공의 안녕 · 공공질서 · 공중건강 · 도덕 · 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에 의해서만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가 제약받는다.
4. 이 협약의 가맹국은 부모(경우에 따라서는 법정후견인)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 자녀에게 종교적 및 도덕적 교육을 베푸는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제 19 조(표현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 · 필기 · 인쇄 · 예술형태 · 본인이 선택하는 그 밖의 전달수단으로, 국경과는 무관하게,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전달하는 자유가 포함된다.
3.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 권리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또 다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에 대한 존중
   (b) 국가의 안전 · 공공질서 · 공중건강 또는 도덕의 보호.

제 20 조(전쟁선전 등의 금지)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2. 차별 · 적대감정 · 폭력을 선동하는 국민적 · 인종적 ·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제 21 조(집회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인정된다. 법률에 따라 가해지는 제한으로서, 국가의 안전 · 공공의 안녕 · 공공질서 또는 공중건강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해지지 않는다.

제 22 조(결사의 자유 · 단결권)

1.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결사하는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2. 법률에 규정된 제한으로서, 국가의 안전 · 공공의 안녕 · 공공질서 또는 공중건강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권리의 자유로운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해지지 않는다. 이 조항의 규정은 군대와 경찰 구성원의 상기 권리의 행사에 대해 합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3. 1948년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이 체결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동 조약의 가맹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해치는 입법조치를 강구하거나,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해치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23 조(가정 및 결혼에 관한 권리)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 단위이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남녀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된다.

3.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그리고 완전한 동의 없이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4. 이 협약의 가맹국은 배우자 쌍방이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또는 이혼하게 될 때 평등한 권리·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혼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된다.

제 24 조(어린이의 권리)

1. 어린이는 누구나,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에 기인하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지위로 보아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 조치를 가정·사회·국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2. 어린이는 누구나 출생 직후에 등록되고 또 이름을 가진다.

3. 어린이는 누구나 국적을 얻을 권리가 있다.

제 25 조(공무 참여)

시민은 누구나, 제2조에 규정된 어떠한 차별 또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고, 다음을 행할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자신이 직접 나서서 또는 자유스럽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것.

(b)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고 또 피선되는 것. 이 선거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을 기반으로 하여 비밀투표로 실시되고, 또한 선거인의 자유스런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 것이라야 한다.

(c) 일반적이고 평등한 조건 아래 자국의 공무에 나서는 것.

제 26 조(법률 앞에서의 평등 및 차별금지)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나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률의 보호를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법률은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또한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기인하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평등하고도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 27 조(소수민족 보호)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 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 소수 민족에 속하는 사람은 다음 권리를 부정당하지 않는다. 그 권리란, 그 집단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뭉쳐서 자신들의 문화를 누리거나 자신들의 종교를 신봉·실천하거나,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부

제 28 조

1.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하의 조문에 규정된 직무를 맡는다.

2. 위원회는 가맹국 국민 중에서 고결한 인격을 갖추었고 또 인권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다. 사법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의 참여가 유익하다는 점이 고려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선출되고 또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29 조

1.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었고 또 가맹국에 의해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들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로 위원회 위원이 선출된다.

2. 가맹국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지명된 사람은 그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누구나 재지명을 받을 수 있다.

제 30 조

1. 위원회 위원의 첫번째 선거는 이 협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선언된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를 제외하고,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 위원 선거일의 적어도 4개월 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의 명단을 3개월 안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지명된 모든 사람의, 알파벳순으로 된 명단을 작성하되 그들을 지명한 가맹국을 적시하여 작성하고, 선거일의 적어도 1개월 전에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4. 위원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고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되는 가맹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의 정족수는 가맹국의 3분의 2로 한다. 이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가맹국 대표가 던진 최대 다수 및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피지명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다.

제 31 조

1. 위원회는 같은 국가의 국민 2명 이상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위원회의 선거에 즈음하여 위원의 배분이 지리적 형평을 유지하고, 또 서로 다른 문명 형태와 주요한 법률 체계가 대표되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제 32 조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위원은 재지명을 받았을 경우 재선될 수 있다. 그러나 첫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9명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첫번째 선거가 있은 직후에 제30조 4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은 앞에서 말한 9명의 이름을 제비로 뽑는다.

2. 임기 만료에 즈음한 선거는 앞에 나온 여러 조문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 33 조

1. 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 잠정적 부재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나머지 위원들이 일치하여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장은 그 사실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알리고, 이에 따라서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위원의 의석이 공석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2. 위원회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했을 경우, 의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알리고, 이에 따라서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사망 또는 사임한 날로부터 그 위원의 의석이 공석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제 34 조

1.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석이 선언되었는데 잔여 임기가 공석선언 때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가 아닐 경우에는, 국제연합사무 총장은 그 사실을 가맹국에 알린다. 각 가맹국은 공석을 채울 목적으로 2개월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명된 사람의 명단을 보낼 수 있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지명된 사람의, 알파벳순으로 된 명단을 작성하여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는 앞에 나온 규정에 따라서 실시된다.

3.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선언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 위원회 위원은 동 조문의 규정에 따라 의석이 없어진 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 35 조

위원회 위원은 국제연합총회가 위원회의 임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 36 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규정된 직무를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직원 및 편의를 제공한다.

제 37 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첫번째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개최한다.

2. 위원회는 첫번째 회의 이후로는 절차 규칙에 정해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3.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에 자리잡은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제 38 조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직무 개시에 앞서, 공개된 위원회 석상에서, 공평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선서한다.

제 39 조

1. 위원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절차 규칙을 정한다. 절차 규칙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위원회의 정족수가 12명이라는 것.
   (b)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제 40 조

1.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자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그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향상이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보고를 다음에 따라 제출할 의무를 진다.
   (a) 자국에 대해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
   (b) 그 이후에는 위원회가 요청할 때.
2. 모든 보고는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고, 동 사무총장은 그 보고를 위원회 앞으로 보내어 검토 받도록 한다. 보고에는, 이 협약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경우에 따라서는, 난점이 기재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위원회와 협의한 다음, 그 보고의 사본을 전문기구 앞으로 보낼 수 있되, 그 전문기구의 권한에 속한 사항과 관계되는 부분을 보낸다.
4. 위원회는 가맹국이 제출한 보고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자신의 보고 및 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견해를 해당국 앞으로 보낸다. 또한 위원회는 가맹국으로부터 받은 보고의 사본과 함께(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견해를 경제사회이사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5. 가맹국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견해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위원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제 41 조

1. 가맹국은 위원회의 다음 권한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어느 때든지 행할 수 있다. 그 권한이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가맹국 중 어떤 나라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가맹국의 통보를 접수하고 또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의 그와 같은 권한을 자국에 관해 인정한다는 선언을 행한 가맹국이 제기하는 경우에만, 그와 같은 통보가 접수되고 또 검토된다. 그와 같은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가맹국이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통보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a) 한 가맹국이 볼 때에 다른 가맹국이 이 협약의 조항을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경우, 그 사안에 대해 서면 통보로 해당국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통보 수령국은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안에 그 사안을 밝히는 설명서 또는 그 밖의 문서를 통보 송부국 앞으로 보낸다. 그 문서에는 그 사안에 관해 이미 취해진, 취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취할 수 있는 국내 절차와 국제 수단에 대한 언급이, 가능한 그리고 타당한 한도까지, 포함되고 있어야 한다.
   (b) 첫 통보가 수령국에 의해 접수된 지 6개월 안에, 관계 가맹국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사안이 조정되지 아니했을 경우, 위원회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그 사안을 위원회에 위임할 권리를 쌍방이 모두 가진다.
   (c) 그 사안에 관해 이용이 가능한 국내의 구제 조치가 취해졌고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안을 처리한다. 그러나 구제 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d)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검토하는 경우,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e) (c)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원회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기초로 하는,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이룰 목적으로 관계 가맹국 사이에서 협의를 주선한다.

(f) 위원회는 위임받은 사안이 어떠한 것이건, (b)에서 말하는 관계 가맹국에 대해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g) (b)에서 말하는 관계 가맹국은 그 사안이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을 때 대표를 출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국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가진다.

(h) 위원회는 (b)에서 말하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를 제출한다.

(i) (e)에 규정된 대로 해결이 이루어질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ii) (e)에 규정된 대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관계 가맹국의 의견서 및 구두 진술의 기록을 첨부한다.

2. 이 조문의 (모든)규정은 규약 가맹국 10개국이 1항의 규정에 따른 선언을 행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선언은 가맹국이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다른 가맹국 앞으로 보낸다. 선언은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 보내는 통고로써 어느 때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선언의 철회가 있기 전에) 이 조문의 규정에 따른 통보가 이미 있었을 경우, 철회가 통보의 주제인 사안의 검토를 막지 못한다. 선언 철회의 통고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해 접수된 후에는, 그 가맹국이 새로이 선언을 행하지 않는 한, 그 가맹국의 새로운 통보는 접수되지 않는다.

제 42 조

1.

(a) 제41조의 규정에 다라 위원회에게 위임된 사안이 관계 가맹국 쌍방에 만족을 주게끔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관계 가맹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약칭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협약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는,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이룰 목적으로 관계 가맹국 사이의 협의를 주선한다.

(b) 조정위원회는 관계 가맹국 쌍방이 받아들이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의 구성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3개월 이내에 관계 가맹국 쌍방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위원회의 비밀투표로 합의를 얻지 못한 조정위원회위원을 선출하되 위원회위원 중에서 3분의 2 다수표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

2. 조정위원회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관계 가맹국 · 협약 가맹국이 아닌 국가 · 41조의 규정에 따른 선언을 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3. 조정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하고, 또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보통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의 국제연합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관계 가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적당한 곳에서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사무국은 이 조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조정위원회를 위해서도 용역을 제공한다.

6. 위원회가 접수한 그리고 취합한 정보는 조정위원회에 대해 제공되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관계 가맹국에 대해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무엇이나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안을 다루기 시작한 지 12개월 이내에, 관계 가맹국에 대해 통지를 보내기 위해 위원회의장에게 보고를 제출한다.

(a) 12개월 이내에 사안의 검토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안의 검토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b) 이 협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을 기초로 하는, 사안의 우호적 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사실과 해결책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c) (b)에서 말하는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에 다음을 수록한다.

· 관계 가맹국간의 분쟁과 관련되는 모든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결과.

· 사안의 우호적 해결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

또한 이 보고서에는 관계 가맹국이 제출한 진술서와 구두진술의 기록이 포함된다.

(d) (c)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보고가 제출될 경우, 관계 가맹국은 조정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수락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그 보고를 접수한 지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장 앞으로 통고한다.

8. 이 조문의 규정은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의 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관계 가맹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작성한 예산안에 따라서 조정위원회위원의 모든 비용을 평등하게 분담한다.

10.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9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가맹국의 비용 부담에 앞서 조정위원회의 비용을 지불할 권한을 가진다.

제 43 조

위원회위원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는 조정위원회위원은 국제연합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가 누리기로 되어 있는 편의·특권·면제를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 이 편의·특권·면제는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약'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다.

제 44 조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기본문서와 조약에 의해서, 또는 그 기본문서와 조약에 따라서 인권분야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바, 이 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상기 절차를 침해하지 않고 적용된다. 또한 가맹국간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이 있을 경우, 이 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은 가맹국이 그 협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다른 절차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제 45 조

위원회는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국제연합총회 앞으로 제출한다.

제 5 부

제 46 조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는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 및 전문기구의 임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의 규정을 이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모든 인민은 그들의 천연 재화와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로이 누리고 또 이용할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그 권리를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6 부

제 48 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가맹국이나 전문기구 회원국, 국제사법 재판소 규정 가입국, 그리고 국제연합총회가 이 협약의 가맹국이 될 것을 요청한 그 밖의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1항에서 언급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을 통보한다.

제 49 조

1. 이 협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협약은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 50 조

이 협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51 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여러 가맹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을 검토, 표결할 가맹국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해 주도록 요청한다. 가맹국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찬성할 경우,국제연합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받기 위해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국제연합총회가 승인하고 또 가맹국의 3분의 2가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했을 때, 개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은, 효력 발생시에, 개정을 수락한 가맹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그 밖의 가맹국은 이 협약의 규정 및 그 국가가 수락한 그 이전의 개정에 의해 증건대로 구속당한다.

제 52 조

제4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통보와 상관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48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a)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제 53 조

1. 이 협약은 중국어 · 영어 · 프랑스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正本)으로 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재연합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협약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가맹국은,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약칭한다)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그 규정의 시행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서는, 협약 제4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칭한다)가,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에 제시된 권리 중 어느 하나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의 통보를 접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

이 의정서에 가맹하는 협약 가맹국은, 위원회가 협약에 제시된 권리 중 어느 하나를 국가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국 국민의 통보를 접수 · 검토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 통보가 의정서에 가맹하지 아니한 협약 가맹국에 관계가 되는 것일 경우, 위원회는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제 2 조

제1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협약에 열거된 권리 중 어느 하나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은 검토를 요구하는 서면 통보를 위원회 앞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개인은 이용이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취했고 달리 방법이 없어야 한다.

제 3 조

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통보 중, 익명으로 된것 · 통보 제출권의 남용으로 생각되는 것 · 협약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접수 불능으로 처리한다.

제 4 조

1. 제3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해, 협약의 규정을 침해한 것으로 되어 있 의정서 가맹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2. 주의 환기를 받은 국가는 6개월 이내에 사안을 밝히는, 그리고 제조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동안에 취한 구제조치를 밝 는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5 조

1. 위원회는 개인 및 관계 가맹국이 보내온 모든 서면 정보에 비추 서,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검토한다.

2.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개인으로부터 온 통보· 검토하지 않는다.

(a) 같은 사안이 다른 국제적 심사 또는 해결 절차에 따라 심의: 고 있지 않을 것.

(b) 이용이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그 개인이 취했고 달 리 방법이 없을 것. 그러나 구제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 고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제 6 조

위원회는 협약 제45조에서 말하는 연차보고에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활동의 개요를 포함시킨다.

제 7 조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해 채택된 '식민지 및 그 인민에게 독립을 부여하는 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이 의정서의 규정은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연합과 전문기구의 주관 아래 체결된 그 밖의 국제조약 및 문서에 의해서 전기 인민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 8 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했거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의해 비준 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했거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의정서에 서명했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을 통보한다.

제 9 조

1. 협약의 발효를 조건으로 하여, 이 의정서는 1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의정서는, 1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 또는 가입 절차를 밟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0 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11 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의정서 가맹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을 검토, 표결할 가맹국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해 주도록 요청한다. 가맹국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개최를 찬성할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받기 위해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국제연합총회가 승인하고 또 가맹국의 3분의 2가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했을 때, 개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은 효력 발생시에 개정을 수락한 가맹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그 밖의 가맹국은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그 국가가 수락한 그 이전의 개정에 의해 종전대로 구속당한다.

제 12 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면 통고로 언제든지 탈퇴를 선언할 수 있다. 탈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그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탈퇴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 이전에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가 이미 있었을 경우, 탈퇴 선언은 그 통보에 대해 이 의정서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제 13 조

이 의정서의 제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통보와 상관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협약 제48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a)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

(c)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선언.

제 14 조

1. 이 의정서는 중국어 · 영어 · 프랑스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正本)으로 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협약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의정서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